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4. . . (제 회)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인상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인상(안 제6조 관련 별표)

- 1)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현재 지급하고 있는 부가급여액은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비용 부담에 비해 충분하지 않음.
- 2)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월 지급액'을 소득 계층별 1만 원 인상함.
- 3) 인상된 부가급여를 지급하게 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득보장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 다. 합의 : 기획재정부와 합의되었음
- 라.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의 월 지급액란 중 “8만원”을 “9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나목의 월 지급액란 중 “8만원”을 “9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월 지급액란 및 같은 표 제3호 월 지급액란 중 “7만원”을 각각 “8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의 월 지급액란 중 “2만원”을 “3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나목의 월 지급액란 중 “4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급여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부가급여부터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연 락 처	(044) 202 - 3321